

 산업통상자원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http://www.motie.go.kr					
2021년 12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월 21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21. 12. 21.(화)	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	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	담당자	정해진 사무관(044-203-3984)	

「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,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문승욱)는 「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*」를 개정(‘21.12.22)하고,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
*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·방법·항목,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□ 이번 고시개정은 「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(21.6)」 및 「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(‘21.4)」 대책을 이행하고,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❶ **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**(태양광·ESS·풍력·연료전지·수력), **전기자동차 충전시설**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, 매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추진
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, 집중호우·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임

-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,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
-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,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

② 공동주택(아파트 등)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및 연 1회 점검 의무화

-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*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·재산피해**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

* 공동주택 현황('20) : 전체 1,853만세대중 1,166만세대로 62.9% 점유

** (공동주택 안전사고, 소방청)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(24,604건)로 2,410명의 인명피해(사망 308명, 부상 2,102명)와 99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

- 이에 따라,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,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(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)
- 이를 통해,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·조치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
-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

【붙임】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」 고시 개정 주요 Q&A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(☎044-203-39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점검주기 및 방법

- ☐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 제3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)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
- ☐ 제6조(점검에 관한 기록·보존)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.

2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서식 활용방법

- 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매월 1회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월차점검시 별지 제9호~14호 서식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함.
- ☐ 점검주기 및 점검시기는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 제3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) 및 제4조(점검주기 및 점검횟수)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(제2호~제14호)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
- ☐ 안전점검 결과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4년간 보존해야 하나,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점검기록표 보관의무가 면제됨

3.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시 부지, 배수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

-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(54일)와 집중호우(687mm)로 26개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(3.6ha)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

*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 : ('18) 5건 → ('19) 2건 → ('20) 26건

-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들뜸, 토사유출, 배수로 이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며,
 -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를 참고하여 설치환경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.

4.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산에 따른 점검방법

- 전기자동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

<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>

구분		현행	개선
의무설치 대상	아파트	500세대 이상	100세대 이상
	공용시설	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	50면 이상
의무설치 비율	신축시설	총 주차면수의 0.5%	5%
	기축시설	<신설>	총 주차면수의 2%

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 시행 예정일('22.1.28)

- 전기차 충전시설은 분전함, 개폐기, 충전커넥터 등 설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점검필요
 - 환경적 요인 : 방수·방습, 충돌방지 조치, 위험표지 설치 등
 - 전기적 요인 : 개폐기, 배선, 접지 및 절연저항 등

5. 공동주택 전기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결과 관리방법

- 전기안전관리자는 「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」 제3조(안전관리 규정의 작성)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·정기점검·정밀점검*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, 제2항에 따라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
- * 일상점검 : 전기설비의 외관·작동·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
- * 정기점검 : 월차, 분기,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
- * 정밀(연차)점검 :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의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

-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해야함(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).
- 안전점검 결과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4년간 보존해야 하나,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점검기록표 보관의무가 면제됨

6. 별지 제9호~15호 서식에 점검항목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

- 별지 제9호~15호 서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,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한 사항임
- 기존 서식의 내용은 반드시 점검 후 기록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점검 시 사용가능